

① (생략) 1. ~ 4. (생략) ② <u>당원 총투표는 당원대회와 병행할 수 있으며,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</u>	① (현행과 같음) 1. ~ 4. (현행과 같음) <u><삭제></u>
--	---

4. 제4장 대의기구 - 제1절 당대회

현행	개정
제11조(지위와 구성) ① (생략) 1. ~ 3. (생략) 4. <u>당소속 국회의원</u> 5. <u>당소속 지방자치단체장</u> 6. <u>당소속 시도의회 의원</u> 7. <u>당소속 자치구, 시, 군의원</u> 8. (생략) 9. <u>최고위원회가 추천하는 부문 대의원</u> 10. <u>당의 각급 지역조직에서 선출하는 당대회 대의원</u> ② (생략)	제11조(지위와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국회의원</u> 5. <u>지방자치단체장</u> 6. <u>시도의회 의원</u> 7. <u>자치구, 시, 군의원</u> 8. (현행과 같음) 9. <u>선출직 대의원</u> 10. <u>추천직 부문대의원</u> ② (현행과 같음)

5. 제4장 대의기구 - 제2절 중앙위원회

현행	개정
제15조(지위와 구성) ① ~ ② (생략) 1. ~ 2. (생략) 3. <u>소속 국회의원</u> 4. <u>최고위원회가 추천하는 부문중앙위원</u> 5. <u>당규에 따라 선출하는 중앙위원</u> ③ (생략)	제15조(지위와 구성) ① ~ ② (현재와 같음) 1. ~ 2. (현재와 같음) 3. <u>국회의원</u> 4. <u>선출직 중앙위원</u> 5. <u>추천직 부문중앙위원</u> ③ (현행과 같음)

6. 제5장 집행기구 - 제1절 당대표와 최고위원회

현 행	개 정
제19조(최고위원회의 지위와 구성) ① ~ ② (생략) 1. ~ 3. (생략) 4. <u>부문 최고위원 2인</u>	제19조(최고위원회의 지위와 구성) ① ~ ② (생략) 1. ~ 3. (생략) 4. <u>추천직 부문최고위원 2인</u>

7. 제5장 집행기구 - 제1절 당대표와 최고위원회

현 행	개 정
제20조(최고위원회의 권한) 최고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5. (생략) 6. <u>지명직 최고위원의 추천</u> 7. (생략)	제20조(최고위원회의 권한) 최고위원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5. (현행과 같음) 6. <u>추천직 부문최고위원의 추천</u> 7. (현행과 같음)

8. 제5장 집행기구 - 제1절 당대표와 최고위원회

현 행	개 정
제22조(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) ① (생략) 1. ~ 2. (생략) 3. (부문 최고위원) <u>부문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가 추천하고, 당대회에서 인준한다.</u>	제22조(당대표와 최고위원의 선출) ① (현행과 같음)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(<u>추천직 부문최고위원</u>) <u>추천직 부문최고위원은 -----.</u>

9. 제6장 중앙위원회 직속기관

현 행	개 정
제26조(선거관리위원회) ① (생략) ② <u>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위원회의 직속</u>	제26조(선거관리위원회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

12. 제10장 지역조직 - 제1절 광역시·도당

현 행	개 정
<p>제40조(광역시·도당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)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선출한다.</p> <p>1. (위원장) 위원장은 해당 광역시·도당 소속 당원 과반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, 당원 1인1표에 의한 유효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선출하되,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, 2위 순위자간의 결선투표로 선출한다.</p> <p>2. (생 략)</p>	<p>제40조(광역시·도당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출)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선출한다.</p> <p>1. (-----) ----- ----- 직접투표를 통해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
13. 제12장 재정

현 행	개 정
<p>제50조(구성)</p> <p>① 당재정은 <u>당비, 후원금, 기탁금, 정당보조금, 기타 당규로 정한 부대수입</u>으로 구성된다.</p>	<p>제50조(구성)</p> <p>① ----- <u>당비, 기탁금, 정당보조금,</u> --.</p>

14. 제12장 재정

현 행	개 정
<p>제51조(예산과 결산)</p> <p>① (생 략) <u><신 설></u></p> <p>② ~ ③ (생 략)</p> <p>④ <u>예산과 결산의 공개방식 등 예산과 결산에</u> 관련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</p>	<p>제51조(예산과 결산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당은 성인지 예산을 작성하고 결산시 집행</u>을 보고한다.</p> <p>③ ~ ④ (현행 제2항, 제3항과 같음)</p> <p>⑤ <u>성인지 예산 및 예산과 결산의 공개방식</u> -----.</p>

